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 번	안 호	549
--------	--------	-----

제출년월일 : '96. 11.

제안자 : 안산시장

□ 제안사유

- 상수도사업의 공공·공익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본청 수도과와 통합, 확대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의 시 본청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3개 과를 설치하고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
-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상수도공급에 필요한 사업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도요금등의 부과 징수업무까지 동시에 수행
-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조례는 폐지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 경기도 자치 12200-3273 ('96. 11. 1) 호 공문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조례안 : 별첨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관리 및 원수개발
3. 취·정수 및 송·배·급수
4.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5.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의 부과, 징수
6.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 과징 업무

제4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조례 제485호 1993. 3. 17)는 이를 폐지한다.